

改正 SGA의 特徵과 問題點에 관한 研究*

崔 銘 國**

-
- I. 序論
 - II. SGA의 主要改正內容과 特徵
 - III. 改正SGA의 問題點
 - IV. 結論
-

I. 序論

국제무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1979년 영국 물품매매법(Sale of Goods Act, 1979; 이하 SGA로 약칭한다.)은 Sale of Goods (Amendment) Act 1994, Sale and Supply of Goods Act 1994, Sale of Goods (Amendment) Act 1995의 개정법 및 여타 다수의 성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폭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분야는 먼저, 묵시조항과 관련하여 “판매가능품질”(merchantable quality)의 정의 대신에 “만족스러운 품질”(satisfactory quality)의 정의를 도입하고, 물품이 “만족스러운 품질”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인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살화물 중의 일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다수의 조항을 개정 내지 신설하였다. 셋째, 계약의 이행 부분에서 매수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로 매수인의 물품 거절권과 물품의 受理(acceptance)에 관한 규칙들을 개정 내지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개정에 따라 제61조 해석 조항상의 물품매매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거나 추가하였으며, 여타 조항에 대한 사소한 개정도 많이 이루어졌다.

* 본 논문은 경일대학교 연구지원금으로 작성되었음.

** 경일대학교 인터넷국제통상학과 부교수.

따라서 본고는 SGA의 주요개정내용과 특징을 개설적으로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II. SGA의 主要改正內容과 特徵

1. 默示條項과 관련한 改正內容

1) 개정의 필요성

1893년 SGA는 “판매가능품질”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소송을 야기 시켰기 때문에 *Henry Kendall & Sons v. William Lillico & Sons Ltd.* 사건¹⁾에서 철저하게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1979년 SGA는 이를 반영시킨 바 있다. “판매가능품질”에 관한 SGA의 정의 규정은 판례법상의 정의를 상당한 정도로 고려한 선언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판례법상의 정의는 매우 유동적인 것이고, 이 유동성은 SGA의 정의 규정에 의해 결코 제한 받지 않는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Reid 경은 *B. S. Brown & Son, Ltd. v. Craiks, Ltd.* 사건²⁾에서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판매가능품질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듯이, “판매가능품질”의 정의가 문제해결에 의문점이 남는다하여 구체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었다.³⁾ 또한, 묵시조항⁴⁾과 관련된 다수의 규정들은 소비자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SGA의 묵시조항과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개정 내지 신설하였다.

1) [1969] 2 A.C. 31.

2) [1970] 1 All E.R. 823, 825.

3) 梁暎煥·崔銘國 共著, 貿易賣買論, 博英社, 1994, pp. 182~185.

4) 1994년 Sale and Supply of Goods Act에 의해, 제10조 내지 제15조와 관련된 표제가 “Conditions and warranties”에서 “Implied terms etc.”로 개정되었다.

2) 주요개정내용

(1) 조건과 담보의 의미

계약조항은 크게 명시조항과 묵시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명시조항과 묵시조항은 다시 條件(condition)과 擔保(warranty)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조건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거절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에 담보는 보다 사소한 조항으로 피해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거절로 간주할 수 없으며 단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물품매매계약에서의 어려운 점은 어떤 조항이 본질적인 사항(조건)의 위반인지 아니면 부수적인 사항(담보)의 위반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SGA 제11조는 이에 관한 몇 가지의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1조 제4항은 매매계약이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서 물품이 일단 수리되었다면, 매수인은 어떠한 조건 위반이라도 담보 위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할 수 없고 또 이미 지급한 대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단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⁵⁾

1994년 Sale and Supply of Goods Act에 의해, SGA 제11조 제1항의 “Subsection (2) to (4) and (7) below do not apply to Scotland and subsection (5) below applies only to Scotland.”를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Scotland.”로 개정하였으며, 제4항에 “Subject to s. 35A below,”를 추

5) 조건과 담보라는 단순한 이분법은 현대의 상업적인 사정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하여 調停條項 또는 中間條項(innominate or intermediate term)이라고 하는 제3의 계약조항을 인정하고 있다. 조건과 담보의 구별은 계약선택상의 문제이지만, 법률상 당연의 조건 내지 담보라고 하는 구별은 기계적 또는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다(望月禮二郎, 英米法, 現代法律學全集 55, 青林書院, 1985, p. 443). 이와 같은 기계적인 적용은 법의 확실성 내지 계산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의심이 없지만, 반면에 이것은 위반을 한 당사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주게 된다. 그래서 법원은 최근 조정조항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건이나 담보의 어느 것도 아닌 계약조항이다. 조정조항의 특성은 계약이 파기될 경우 그 위반의 효과가 그 성격이나 중대함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즉 위반이 중대하다면 피해 당사자는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반면에 위반이 심각하지 않다면 계약은 존속되고 피해 당사자는 그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는 *Cehave N.V. v. Bremer Handelsgesellschaft mbH, The Hansa Nord* [1976] 1 Q.B. 44 사건이다(Clive M. Schmitthoff, *Export Trade*, 10th edition, Stevens & Sons, 2000, pp. 87~89).

가하였고, 제5항을 무효화시켰다. 신설된 제35A조는 일부 거절권을 다루고 있다.

(2) 물품을 판매할 권리

SGA 제12조는 매매된 물품과 매수인이 기대할 수 있는 물품의 소유권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을 규정함으로써 조건과 담보에 관한 정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제한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매의 경우 물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매매 합의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 물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다는 묵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품은 고지되지 않은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매수인은 물품에 관한 평온한 점유를 가진다는 묵시담보를 두고 있다. 제12조에서 발생하는 의무위반에 관한 책임은 매매계약의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도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1994년 Sale and Supply of Goods Act에 의해, SGA 제12조 제1항의 “condition”을 “term”으로, 제2항, 제4항, 제5항의 “warranty”를 “term”으로 개정 후, 제5A항⁶⁾을 추가하고, 제1항에서의 implied term은 조건이고,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의 implied term은 담보임을 규정하였다.

(3) 계약 명세에의 일치성

SGA 제13조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첫 시금석 즉, 물품은 어떠한 명세에도 일치하여야 한다는 묵시조항을 담고 있다. 본 조는 개인간의 매매는 물론 상거래를 포함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소비자계약에서는 본 조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위반에 관한 책임은 계약의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도 배제되거나 제한받지 아니하며, 상거래를 포함하여 여타 계약에서의 그 책임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한 계약조항에 의해 배제되거나 제한 받을 수 있다. 1994년 Sale and Supply of Goods Act에 의해, 제13조 제1항의 “condition”을 “term”으로 바꾸고, 제1A항⁷⁾을 추가하였으며, 제1항에서의 implied term은 조건임을 규정하였다.

6) As regards England 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the term implied by subsection (1) above is a condition and the terms implied by subsection (2), (4) and (5) above are warranties.

7) As regards England 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the term implied by subsection (1) above is a condition.

(4) 만족스러운 품질

SGA 제14조는 비과학적으로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1994년 Sale of Supply of Goods Act 1994에 의해 개정되었다.⁸⁾ 즉, 제 14조 제1항과 제4항의 “condition or warranty”를 “term”으로, 제3항의 “condition”을 “term”으로 개정하였고, 기존의 제2항 대신에 제2항, 제2A항, 제 2B항 및 제2C항을 신설하였으며,⁹⁾ 기존의 제6항인 “판매가능품질”의 정의 조항¹⁰⁾을 “As regards England 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the terms implied by subsections (2) and (3) above are conditions.”로 대체하였다.

소비자계약에서는 제14조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위반에 관한 책임은 계약의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도 배제되거나 제한 받을 수 없으며, 반면에 상거래를 포함하여 여타 계약에서의 그 책임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한 배제되거나 제한 받

- 8) A. G. Guest edited, *Benjamin's Sale of Goods*, 5th edition, Steet & Maxwell, 1997, § 11-025(이하 Benjamin's Sale of Goods로 인용한다.). 1999년 5월 25일자 “Directive 99/44/EC”가 영국법의 일부로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제14조는 2001년 12월말까지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 9) (2) Where the seller sells goods in the course of a business, there is an implied term that the goods supplied under the contract are of satisfactory quality.
 (2A)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goods are of satisfactory quality if they meet the standard t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regard as satisfactory, taking into account of any description of the goods, the price(if relevant) and all the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2B)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quality of goods includes their state and condition and the following(among others) are in appropriate cases aspects of the quality of goods-
 (a) fitness for all the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e kind in question are commonly supplied,
 (b) appearance and finish,
 (c) freedom from minor defects,
 (d) safety, and
 (e) durability.
 (2C) The term implied by subsection (2) above does not extend to any matter making the quality of goods unsatisfactory-
 (a) which is specifically drawn to the buyer's attention before the contract is made,
 (b) where the buyer examines the goods before the contract is made, which that examination ought to reveal, or
 (c) in the case of a contract for sale by sample, which would have been apparent on a reasonable examination of the sample.
- 10) Goods of any kind are of merchantable quality within the meaning of subsection (2) above if they are as fit for the purpose or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at kind are commonly bought as it is reasonable to expect having regard to any description applied to them, the price(if relevant) and all the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을 수 있다. SGA는 일반적 품질에 관한 기준인 “판매가능품질”의 정의와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만족스러운 품질”의 정의를 도입하고 있다. 즉, 제14조 제2항에서 매도인이 거래과정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물품은 “만족스러운 품질”이라는 묵시조항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제2A항과 제2B항은 거래과정에서 모든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담고 있다.

먼저, 제14조 제2A항은 매수인이 기대할 수 있는 품질의 기준인 “만족스러운 품질”에 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다. 기존의 “판매가능품질”의 정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첫째로 “판매가능”에 관한 상업적 의미를 완화시켰으며, 둘째로 정의 상 중심이 되는 요소로서 목적 적합성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였으며, 셋째로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을 도입한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사람은 매수인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하며, 당해 거래에 적합하지 않는 합리적인 제3자는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¹¹⁾

제14조 제2B항은 물품이 “만족스러운 품질”의 기준에 도달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다. 먼저, 품질에 물품의 상태(state and condition)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SGA 제61조에 있는 품질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본 조항으로 옮긴 것이다. 이들 요소 중에서 목적 적합성을 먼저 두고 있는데, 이는 가장 합당한 요소로서 다른 요소들에 우선하는 유일한 반론의 근거이다. 그러나 유념할 점은 “단일의 목적 또는 여러 목적”이란 기존의 문언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통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동종 물품에 관한 모든 목적”이란 문언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물품이 통상적이지 않는 목적을 제외한 모든 통상적인 목적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어느 정도 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목적에 관한 규정은 법원에게 약간의 융통성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¹²⁾ 이를 위한 새로운 지침으로 외관과 마무리(appearance and finish), 사소한 하자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minor defects), 안전성(safety)과 내구성(durability)을 들고 있다. 여기서 “사소한 하자로부터의 자유”란 물품은 완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사소한 하자

11) *Benjamin's Sale of Goods*, §11-049.

12) *Benjamin's Sale of Goods*, §11-050.

라도 매도인은 “만족스러운” 품질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¹³⁾ “안전성”은 1987년 Consumer Protection Act 제10조와 1994년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s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안전성 요건”(general safety requirement)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물품은 최대한 안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으며, 매수인에 대한 경고, 지시 및 안내를 요구하고 있다. “내구성”은 매수인이 물품에 대하여 합리적 기간 동안 그 기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조건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되는 만족스럽지 못한 물품으로 간주된다.

제14조 제2C항은 모든 물품은 “만족스러운 품질”이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14조 제2C항에서 제2항의 묵시조건은 첫째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매도인이 물품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점을 특별히 매수인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경우, 둘째로 매수인이 계약체결 전에 물품을 검사한 경우에 그 검사에서 하자가 발견될 수 있는 경우, 셋째로 견본매매인 경우에 그 견본의 합리적인 검사로 하자가 분명해질 수 있는 경우는 물품을 만족스럽지 못한 품질로 만드는 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5) 견본매매

SGA 제15조는 견본매매에서의 묵시조건을 담고 있으며, 거래과정에서 견본매매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다. 소비자계약에서 제15조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위반의 책임은 계약의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도 배제되거나 제한 받을 수 없으며, 상거래를 포함하여 여타 계약에서의 그 책임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한 계약조항에 의해 배제되거나 제한 받을 수 있다. 1994년 Sale and Supply of Goods Act에 의해, 제15조 제2항의 “condition”을 “term”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항 (b)호를 무효화시키고, 제2항 (c)호의 “rendering them unmerchantable”을 “making their quality unsatisfactory”로 개정하였으며, 제3항의 “In subsection (2)(c) above “unmerchantable” is to be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4(6) above.”을 “As regards England 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13) Bill Thomas, *The Sale of Goods Act explained*, The Stationery Office, 2000, p. 16.

the term implied by subsection (2) above is a condition.”으로 바꾸었다.

(6) 소비자가 아닌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의 변경

SGA 제15A조¹⁴⁾는 소비자가 아닌 경우에 위반이 사소하거나 또는 기술적인 경우와 같은 조건위반이 있을 경우, 매수인의 물품 거절권을 제한할 의도로 제정되었다.¹⁵⁾ 제15A조는 매도인이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해 묵시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와 매수인이 소비자로 다루어지지 않을 때 적용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 만약 그 위반이 너무 사소하여¹⁶⁾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 위반은 조건위반으로 간주되지 않고 담보위반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수인의 물품 거절권에 관한 성문법적인 제한은 계약에 반대의 의도가 있거나 또는 묵시되어 있다면 배제될 수 있다. 제15A조는 명시조항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묵시조항의 위반에만 적용되며 따라서 선적시기와 같은 명시조항에는 그 적용이 없으며, 매도인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FOB 계약이나 CIF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제15A조를 적용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묵시된다는 주장이 있다.¹⁷⁾¹⁸⁾

14) 본 조는 1994년 Sale and Supply of Goods Act에 의해 신설되었다.

(1) Where in the case of a contract of sale-

(a) the buyer would, apart from this subsection, have the right to reject goods by reason of a breach on the part of the seller of a term implied by section 13, 14 or 15 above, but

(b) the breach is so slight that it would be unreasonable for him to reject them,

then, if the buyer does not deal as consumer, the breach is not to be treated as a breach of condition but may be treated as a breach of warranty.

(2) This section applies unless a contrary intention appears in, or is to be implied from, the contract. (3) It is for the seller to show that a breach fell within subsection (1)(b) above. (4)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Scotland.

15) *Benjamin's Sale of Goods*, § 12-024.

16) 법원이 “사소한” 위반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명확하지 않다(Bill Thomas, *op.cit.*, p. 21).

17) *Benjamin's Sale of Goods*, § 11-049.

18) 1994년 Sale and Supply of Goods Act에 의해 신설된 제15B조는 스코틀랜드에서의 모든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계약의 실질적인 조항(material term)의 위반이 있을 경우 피해 당사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거절로 취급해 이미 지급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보다 사소한 조항의 위반은 물품거절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통해서 구제를 받게 된다. 소비자계약에서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묵시조항의 위반은 계약의 실질적인 조항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동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Where in a contract of sale the seller is in breach of any term of the contract(express or implied), the buyer shall be entitled-

(a) to claim damages, and

(b) if the breach is material, to reject any goods delivered under the

2. 所有權 移轉과 有關한 改正內容

1) 改正의 必要性

계약이 이행되는 중의 어느 시기에 물품이 특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의 원칙들을 “대량의 살화물(bulk cargo) 중의 분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매매”(이하 살화물의 일부매매로 약칭한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살화물의 일부매매가 있는 경우 다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로 소유권은 물품이 특정되기 전까지는 이전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 상의 원칙과 SGA 제16조의 규정으로부터 야기되고 있다. 무역매매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상당한 기간까지 매매의 목적물이 분리되지 않은 살화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을 때 특히 민감하게 발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과 관련된 살화물은 선박이 특정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 분리되어 개별 매수인에게 인도되고 있다. 물품이 분리되어 특정될 때까지의 기간 중에는 물품이 멸실되거나 부패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지급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살화물의 일부매매에 해당하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조항들이 1995년 Sale of Goods (Amendment) Act에 의해 대폭 개정되었다. 즉, 제16조의 서두에 “Subject to section 20A below,”를 추가하였고, 제18조 규칙 5에 제3항과 제4항¹⁹⁾을 추가하였으며, 제20A조²⁰⁾와 제20B조²¹⁾를 신설하였다.

contract and treat it as repudiated.

(2) Where a contract of sale is a consumer contract, then,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b) above, breach by the seller of any term(express or implied)-

(a) as to the quality of the goods or their fitness for a purpose,

(b) if the goods are, or are to be, sold by description, that the goods will correspond with the description,

(c) if the goods are, or are to be, sold by reference to a sample, that the bulk will correspond with the sample in quality, shall be deemed to be a material breach.

(3) This section applies to Scotland only.

- 19) (3) Where there is a contract for the sale of a specified quantity of unascertained goods in a deliverable state forming part of a bulk which is identified either in the contract or by subseque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the bulk is reduced to (or to less than) that quantity, then if the buyer under that contract is the only buyer to whom goods are then due out of the bulk-

-
- (a) the remaining goods are to be taken as appropriated to that contract at the time when the bulk is so reduced; and
- (b) the property in those goods then passes to that buyer.
- (4) Paragraph (3) above applies also (with the necessary modifications) where a bulk is reduced to (or to less than) the aggregate of the quantities due to a single buyer under separate contracts relating to that bulk and he is the only buyer to whom goods are then due out of that bulk.
- 20) (1) This section applies to a contract for the sale of a specified quantity of unascertained goods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a) the goods or some of them form part of a bulk which is identified either in the contract or by subseque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 (b) the buyer has paid the price for some or all of the good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contract and which form part of the bulk.
- (2) Where this section applies, then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as soon as the conditions specified in paragraphs (a) and (b) of subsection (1) above are met or at such later time as the parties may agree-
- (a) property in an undivided share in the bulk is transferred to the buyer, and
- (b) the buyer becomes an owner in common of the bulk.
- (3) Subject to subsection (4) below,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undivided share of a buyer in a bulk at any time shall be such share as the quantity of goods paid for and due to the buyer out of the bulk bears to the quantity of goods in the bulk at that time.
- (4) Where the aggregate of the undivided shares of buyers in a bulk determined under subsection (3) above would at any time exceed the whole of the bulk at that time, the undivided share in the bulk of each buyer shall be reduced proportionately so that the aggregate of the undivided shares is equal to the whole bulk.
- (5) Where a buyer has paid the price for only some of the goods due to him out of a bulk, any delivery to the buyer out of the bulk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be ascribed in the first place to the goods in respect of which payment has been made.
- (6)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payment of part of the price for any goods shall be treated as payment for a corresponding part of the goods.
- 21) (1) A person who has become an owner in common of a bulk by virtue of section 20A above shall be deemed to have consented to-
- (a) any delivery of goods out of the bulk to any other owner in common of the bulk, being goods which are due to him under his contract;
- (b) any dealing with or removal, delivery or disposal of goods in the bulk by any other person who is an owner in common of the bulk in so far as the goods fall within that co-owner's undivided share in the bulk at the time of the dealing, removal, delivery or disposal.
- (2) No cause of action shall accrue to anyone against a person by reason of that person having ac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a) or (b) of subsection (1) above in reliance on any consent deemed to have been given under that subsection.
- (3) Nothing in this section or section 20A above shall-
- (a) impose an obligation on a buyer of goods out of a bulk to compensate any other buyer of goods out of that bulk for any shortfall in the goods received by that other buyer;
- (b) affect any contractual arrangement between buyers of goods out of a bulk for adjustments between themselves; or
- (c) affect the rights of any buyer under his contract.

2) 영국판례상의 원칙과 비판

살화물의 일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지시서를 제공할 때 물품은 불특정상태로 남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도지시서의 제공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SGA 제16조22). 살화물의 일부매매가 특정되기 전에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규칙에 관한 중요한 결과의 하나는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담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채권자가 된다는 점이다. *Re Wait* 사건²³⁾이 이러한 상황을 잘 예시해 주고 있다. 본건에서 11월 20일에 Wait 회사는 첼린저 호의 밀 1천톤을 CIF 계약으로 구입하였다. 그는 역시 CIF 계약으로 11월 21일에 1천 톤 중 5백 톤을 재매각하였다. 밀은 12월 21일에 선적되었고, 재구입자는 송장에만 근거해서 2월 5일에 5백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첼린저 호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Wait 회사는 파산하였으며 따라서 파산 시에 재구입자의 5백 톤의 밀은 특정되지 않았고 소유권도 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 재구입자는 SGA 제16조의 효과를 피하고 또 특정이행을 요구함으로써 파산자의 물품 중에서 5백 톤의 인도를 획득하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SGA 제52조에 의해 물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근거에서 이 주장을 거절하였다.²⁴⁾

Davis 교수는 *Re Wait* 사건의 판결은 두 가지의 기준, 즉 첫째는 그 계약에서 소유권이 형평법 상의 양도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한 기준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과 둘째로 SGA를 이유로 한 특정이행의 불가능성에 의존하였다고 밝혔다.²⁵⁾ Davies 교수는 또한 다수의견에 의해 채택된 두번째의 판결기준인 특정이행의 불가능성에 대해서도 SGA 제52조의 적용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

22) 동조는 "Subject to section 20A below, where there is a contract for the sale of unascertained goods no property in the goods is transferred to the buyer unless and until the goods are ascertained."라고 규정하고 있다.

23) [1927] 1 Ch. 606.

24) *Re Wait*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매도인이 재구입자에게 밀 1천 톤 중 5백 톤을 목적지에의 도착 시에 충당하기로 약속한 것인지 아니면 매도인이 살화물의 분리되지 않은 부분을 비례기준(*pro rata basis*)에 의하여 재구입자에게 공동 소유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항소법원에서 Hanworth 경과 Atkin 판사는 전자의 사실이 정확한 것으로 보았으며, 반면에 소수의견을 제시한 Sargant 판사는 후자의 견해를 취하였다(Iwan Davies, "Continuing Dilemmas with Passing of Property in Part of a Bulk," *JBL*, 1991, pp. 118~119).

25) Iwan Davies, *op. cit.*, p. 128.

판하였다. 즉, 동조는 특정물 또는 확정물을 인도할 계약위반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특정이행을 명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동조에 대하여 제한적인 접근방법을 취하였다고 하였다.²⁶⁾ 이러한 Davis 교수의 비판을 종합하면, 재구입자는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재매각한 밀 5백 톤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재구입자는 밀 5백 톤을 인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한, Schmitthoff 교수는 *Re Wait*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살화물 중의 분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의 보다 공평한 해결책은 살화물에 대해 이익을 가진 자는 그 이익에 대하여 비례적인 소유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²⁷⁾ 그는 나아가 *The Ypatianna* 사건²⁸⁾과 미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 이하 UCC로 약칭한다.) 제2-105조 제4항²⁹⁾을 예로 들면서 살화물의 일부에 대해 공동 소유권의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Karlshamns Oljefabriker v. Eastport Navigation Co. (The Elafi)* 사건³⁰⁾으로 *Re Wait* 사건의 규칙에 관한 효과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Re Wait* 사건의 규칙이 폐기되지 않아 논쟁거리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규칙이 상급법원 또 필요하다면 의회에 의해 수정되기를 바라고 있었다.³¹⁾

26) Iwan Davies, *op. cit.*, pp. 119~121.

27) Clive M. Schmitthoff, *Export Trade*, 9th edition, Stevens & Sons, 1990, p. 118.

28) [1987] 2 W. L. R. 869. 본 건에서 Staughton 판사에 의해 共同 所有權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었다. 본 건은 Ypatianna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 소유의 원유를 구 소련의 Novorossisk 항에서 자신의 선박에 선적하였는데 이 원유는 자신의 원유와 혼합되었다. Staughton 판사는 혼합된 원유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당사자들의 공동 소유였음을 판시하였다. 그 결과로 원고는 혼합된 원유 중의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29) 동조는 “An undivided share in an identified bulk of fungible goods is sufficiently identified to be sold although the quantity of the bulk is not determined. Any agreed proportion of such a bulk or any quantity thereof agreed upon by number, weight or other measure may to the extent of the seller’s interest in the bulk be sold to the buyer who then becomes an owner in common.”라고 규정하고 있다.

30) [1981] 2 *Lloyd’s Rep.* 679.

31) Clive M. Schmitthoff, *Export Trade*, 9th edition, p. 118.

3) 양화와 통합에 의한 특징

살화물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은 양화(exhaustion)와 통합(consolidation)을 통한 충당에 의해서 이전한다고 하는 일반적 규칙은 두 가지의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는 살화물 전체가 동일한 목적지까지 운송될 것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그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됨에 따라 화물의 다른 부분을 수령할 권리가 다른 수화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정의 어느 것이든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 처음부터 살화물의 분리되지 않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 물품은 양화나 통합에 의해 목적지에서 충당 전에 특정되며 따라서 물품의 소유권은 그때 이전된다.³²⁾ 선박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최종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판매된 수량만을 남겨둔 채 살화물 중의 나머지 부분이 다른 항구에서 양화된다면 양화에 의한 특징이 있게 된다. SGA는 제18조 규칙 5에 두 가지의 규칙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원칙에 성문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 첫째 내용은 제18조 규칙 5 제3항인데, 이는 “불특정물 중의 명시된 수량의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계약에 의해서나 또는 후속의 합의에 의해서 확정되는 살화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는 분명히 지정선박의 화물 중 일부를 이루는 명시된 수량의 매매계약을 다루고 있다. 새로운 규칙은 계속해서 “살화물이 명시된 수량까지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어서 매수인이 그 살화물의 나머지 부분이 그 매수인 분으로 남는다면” 두 가지의 결과 즉 “a) 나머지 물품은 그 화물이 그렇게 줄어들었을 때 그 계약에 충당된 것으로 간주되며, b) 물품의 소유권은 그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의 새로운 규정은 제18조 규칙 5 제4항인데, 이는 매수인이 별도의 계약에서 규칙 5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살화물의 분리되지 않은 부분에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양화에 의한 특징의 원칙을 확장하고 있다. 예컨대, 두 계약으로(각각의 계약에는 1,000 톤씩) 매수인이 5,000 톤의 살화물 중 1,000 톤씩을 구입한 경우이다. 살화물이 2,000 톤까지 줄어들었을 때 매수인은 그 화물에 대해 유일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양화가 나타난다. 통합은 양화의 반대

32) *Peter Cremer v. Brinkers Groudstoffen N. V.* [1980] 2 Lloyd's Rep. 605, 608.

이다. 이는 살화물의 분리되지 않은 부분의 매수인이 나머지 화물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화물의 나머지 부분을 획득할 때 발생한다.³³⁾ 이러한 두 과정은 서로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A와 B가 10,000 톤의 살화물 중 각각 1,000 톤씩 구입하고, 그 살화물이 다른 매수인에게 인도되고 또 B가 자신의 1,000 톤을 A에게 판매하여 2,000 톤까지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이다. 따라서 SGA에서는 화물의 나머지 부분은 특정되어 소유권은 A에게 이전되며, 조건 중의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이전될 수 있다.³⁴⁾

4) 제20A조의 원칙

SGA 제20A조의 주요 목적은 매수인이 확정된 살화물 중의 분리되지 않은 부분을 이루는 물품의 명시된 수량에 대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와 매수인이 대금지급한 물품이 특정되기 전에 매도인이 지급불능(파산)이 된 경우 매수인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³⁵⁾ 매수인의 지위 향상은 신설된 제20A조를 조건으로 하는 SGA 제16조를 됴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이에 의하면 확정된 살화물의 분리되지 않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 불특정물의 명시된 수량의 매수인은 그 살화물의 소유권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제20A조는 “불특정물의 명시된 수량”의 매매계약에만 적용된다. 이 문언에는 두 가지의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즉, 수량이 명시되어야 하며 또 물품은 불특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무역거래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 하면, 전체 화물 중의 일부 또는 비율로 표시된 살화물의 분리되지 않은 부분은 SGA가 개정된 후에는 특정물에 관한 성문법의 정의 내에 들기 때문이다.³⁶⁾ 예컨대, “아리랑호에 살화물로 선적된 면화의 반”으로 표기된 매매계약은 특정물 매매계약이 되며 따라서 제20A조의 범주 내에 들지 않는다. 즉, 그러한 물품의 소유권 이전은 기존의 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반면에 “아리랑호에 살화물로 선적

33) *Karlshamns Oljefabriker v. Eastport Navigation Co. (The Elafi)* [1981] 2 Lloyd's Rep. 679.

34) *Benjamin's Sale of Goods*, §18-228.

35) *Law Com. No. 215, Scot. Law Com. No. 145* (1993), §4.2; cf. *ibid.*, §5.2.

36) *Benjamin's Sale of Goods*, §18-230.

된 면화 1,000 톤 중 500 톤”으로 표기된 매매계약은 그 문언에 관한 새로운 성문법상의 정의 범주 내에서 “특정물”의 매매계약이 될 수 없다. 왜냐 하면, 판매된 수량은 전체 중에 일부 또는 비율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제20A조의 범주 내에 들 수 있다.

제20A조 제1항 a호는 물품이 “살화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며, 살화물이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나 또는 후속의 합의에 의해서 확인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20A조 제1항 b호에서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과 살화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대금을 지급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요건은 SGA를 개정한 주요 목적으로, 매도인의 파산 위험에 대해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20A조 제2항은 제20A조가 적용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달리 합의된 바가 없다면) 제20A조 제1항의 a호와 b호에 명시된 요건들이 충족되거나 또는 추후에 그 당사자들이 (a) 살화물 중의 분리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 그리고 (b) 매수인이 살화물에 대해 공동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을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이 아리랑호에 선적된 면화 1,000 톤 중 500 톤에 관한 매매이며 매수인이 500 톤에 대한 대금전액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1,000 톤 중 분리되지 않은 반에 대한 부분을 획득하며 그 살화물에 대하여 공동의 소유자가 된다. 그리고 매도인 측의 파산이 있을 경우 이러한 소유권적 이익을 이유로 해서 그는 담보권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그 성격상 매수인은 또한 물품에 손해를 일으키게 한 태만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³⁷⁾³⁸⁾

37) *Leigh & Silavan Ltd v. Aliakmon Shipping Co. Ltd (The Aliakmon)* [1986] A.C. 785.

38) *Benjamin's Sale of Goods*, § §18-231~238.

5) 제20B조의 원칙

2인 이상이 물품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는 물품의 공동소유자이지 단순히 그 해당되는 몫만큼의 물품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습법에서는 공동의 차지인(tenant)은 특정 동산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에 대한 파괴 없이는 자신의 동료에 대해 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확립되어 있다.³⁹⁾ 그러나 어떤 공동소유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공동소유물품의 사용, 이익 등을 완전하게 탈취하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취득자에게 물품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케 하는 식으로 공동소유물품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다른 당사자의 이익을 파괴하는 행위에 속하며 횡령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습법상의 규칙이 1977년 Torts(Interference with Goods) Act 제1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공동소유자에 의한 권한 없는 처분의 경우까지 확대 적용되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취득자는 완전한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만약 SGA 제20B조가 신설되지 않았다면, 제20A조에 의해 살화물의 분리되지 않은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살화물의 공동소유자가 되는 매수인은 자신의 분리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는 어떤 물품이라도 적법하게 충당할 수 없거나 또는 인도 받을 수 없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SGA는 먼저, 제20B조 제1항에서 살화물의 공동소유자 각자는 자신의 계약 하에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수량의 인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공동소유자의 각자는 다른 공동소유자(매도인 포함)가 자신의 분리되지 않은 부분에 속하는 살화물의 어떤 취급이나 제거, 인도 또는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1항 b호에서 설정된 상황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제3자는 살화물의 다른 공동소유자에 의한 행위로부터 제2항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제2항은 또한 제1항 a호에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믿고 있는 공동소유의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청산인이나 수령자를 보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조 제3항은 살화물에서 인도를 수령하는 매수인은 부족분 때문에 주문량을 완전하게 받지 못하는 어떤 공동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⁴⁰⁾

39) *Morgan v. Marquis (1854)* 9 Exch. 145, 148.

3. 反社會的 內容의 削除

1994년 Sale of Goods (Amendment) Act에 의해, 매수인은 선의로 또 물품의 진정한 출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개시장을 통하여 구입하는 물품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SGA 제22조를 반사회적 내용이라 하여 무효화시켰다.

4. 契約履行과 관련한 改正內容

1) 잘못된 수량의 인도

SGA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은 합의된 수량의 물품을 인도할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너무 적은 수량을 인도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물품 전체를 거절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너무 많은 수량을 인도하게 되면, 매수인은 그가 계약한 수량만을 受理하고 나머지를 거절하거나 또는 물품 전체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SGA는 매수인이 물품의 어떤 부분을 수리하면 그는 계약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너무 많은 수량이 인도되었으나 수리된 경우에서의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매수인은 합의된 가격으로 초과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994년 Sale and Supply of Goods Act에 의해, SGA 제30조 제2A항, 제2B항, 제2C항, 제2D항 및 제2E항을 추가하고⁴¹⁾, 제4항을 무효화시켰다.

40) Bill Thomas, *op. cit.*, p. 29.

41) (2A) A buyer who does not deal as consumer may not-

(a) where the seller delivers a quantity of goods less than he contracted to sell, reject the goods under subsection (1) above, or

(b) where the seller delivers a quantity of goods larger than he contracted to sell, reject the whole under subsection (2) above,

if the shortfall or, as the case may be, excess is so slight that it would be unreasonable for him to do so.

(2B) It is for the seller to show that a shortfall or excess fell within subsection (2A) above.

(2C) Subsections (2A) and (2B) above do not apply to Scotland.

(2D) Where the seller delivers a quantity of goods-

추가된 제2A항 내지 제2E항은 매수인이 잘못된 수량을 인도 받은 경우에 상당한 정도의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추가되었다. 수량과부족이 사소하여 객관적인 제3자가 물품 전체를 거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인인 매수인은 물품 전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매수인이 소비자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A항은 과부족이 사소한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de minimis non curat 규칙⁴²⁾을 성문법에 다시 반복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de minimis non curat 규칙을 초과하는 과부족은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매수인이 계약 수량 전체를 受理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또 부족분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면, 매수인이 이 계약 수량에서 사소한 부족에 근거해서 인도된 물품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컨대, 초과 수량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정확한 수량을 분리한 후 초과분을 거절하는 것이 상관행이거나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초과 수량에 대해 대금지급을 요청 받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계약 수량을 약간 초과했다는 근거에서 인도된 물품 전체를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매수인이 소비자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과 과부족이 제2A항의 범주 내에 속한다는 입증책임은 매도인 측에 있다.⁴³⁾

이미 본 바와 같이, SGA 제15A조는 물품의 명세와 품질의 일치성에 관한 성문법적 묵시조항의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물품 거절권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물품이 계약명세의 물품이 아닌 경우와 같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⁴⁴⁾ 제30조 제2A항에서 말하는 잘못된 수량에 대한 매수인의 물품 거절권의 제한도 마찬가지이다.⁴⁵⁾ 이러한 내용은 물품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해서 발생하는 거절권과 관련된다. 잘못된 수량과 관련되는 한, 제30조 제2A항은 매도인이 잘못된 수량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⁴⁶⁾

(a) less than he contracted to sell, the buyer shall not be entitled to reject the goods under subsection (1) above,

(b) larger than he contracted to sell, the buyer shall not be entitled to reject the whole under subsection (2) above, unless the shortfall or excess is material.

(2E) Subsection (2D) above applies to Scotland only.

42) 이를 de minimis 규칙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이 규칙의 의미는 “경미하고 또한 매수인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수량의 부족이나 초과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거절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43) *Benjamin's Sale of Goods*, §8-047.

44) *Benjamin's Sale of Goods*, §18-224.

45) *Benjamin's Sale of Goods*, §19-012.

제15A조도 마찬가지로 서류가 예컨대, 선화증권이 위조이거나 고장부인 경우와 같은 여타의 이유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⁴⁷⁾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은 묵시조항의 위반에 있게되나, SGA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해 묵시된 조항은 아니며, 그리고 제15A조는 이러한 묵시조항의 위반 시에만 적용된다. 서류가 선적기간을 벗어나는 선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서조차도(따라서 매도인은 물품에 관한 명세에의 일치성에 관한 성문법적 묵시조항의 위반에 있게 된다.), 본 조는 매수인의 서류 거절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IF 계약에서 매수인의 서류 거절권은 그의 물품 거절권과는 극히 구분되며,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제15A조가 그러한 매수인의 물품 거절권에 적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동조는 그의 서류 거절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⁴⁸⁾

2) 매수인의 물품 검사권

SGA 제34조는 물품이 매수인에게 제공된 때, 매수인은 물품이 계약에 또는 물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견본에 일치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물품을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1994년 Sale and Supply of Goods Act에 의해, SGA 제34조 제1항을 무효화시키고, 제2항 말미에 “and, in the case of a contract for sale by sample, of comparing the bulk with the sample”을 추가하였다.

3) 물품의 受理

SGA 제35조는 물품의 受理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94년 Sale and Supply of Goods Act에 의해, 제35조 제1항의 내용을 재정비하고, 제2항에서 제7항까지를 추가한 후, 제2항을 제8항으로 바꾸었다.⁴⁹⁾

46) *Benjamin's Sale of Goods*, § 19-035.

47) *Benjamin's Sale of Goods*, § 19-037.

48) *Benjamin's Sale of Goods*, § 19-051.

49) (1) The buyer is deemed to have accepted the goods subject to subsection (2) below-

(a) when he intimates to the seller that he has accepted them, or

(b)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him and he does any act in

물품의 受理 부분은 물품매매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受理란 물품의 현실적인 교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 말의 일상적인 사용과도 무관하다. 이는 매우 신중한 법적인 의미를 지니는 법률용어이며, 매수인이 일단 물품을 受理하였다면, 그는 영원히 물품을 거절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또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규칙은 모든 계약에 적용되나, 당사매매에서는 매수인의 권리를 수정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 조항을 들 수 있다.

제35조 제1항 (a)호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受理하였음을 통지할 때, 매수인은 물품을 受理하였다는 일반적인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에서 “매수인의 서명은 1979 SGA 제35조에 의한 受理가 된다.”는 조항을 들 수도 있다. 제1항 (b)호에서는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고 또 그가 물품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소유권과 양립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물품을 受理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relation to them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ownership of the seller.

(2) Where goods are delivered to the buyer, and he has not previously examined them, he is not deemed to have accepted them under subsection (1) above until he has had a reasonable opportunity of examining them for the purpose-

(a) of ascertaining whether they ar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nd

(b) in the case of a contract for sale by sample, of comparing the bulk with the sample.

(3) Where the buyer deals as consumer or (in Scotland) the contract of sale is consumer contract, the buyer cannot lose his right to rely on subsection (2) above by agreement, waiver or otherwise.

(4) The buyer is also deemed to have accepted the goods when after the lapse of a reasonable time he retains the goods without intimating to the seller that he has rejected them.

(5) The questions that are material in determining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4) above whether a reasonable time has elapsed include whether the buyer has had a reasonable opportunity of examining of goods for the purpose mentioned in subsection (2) above.

(6) The buyer is not by virtue of this section deemed to have accepted the goods merely because-

(a) he asks for, or agrees to, their repair by or under an arrangement with the seller, or

(b) the goods are delivered to another under a sub-sale or other disposition.

(7) Where the contract is for the sale of goods making one or more commercial units, a buyer accepting any goods included in a unit is deemed to have accepted all the goods making the unit; and in this subsection “commercial unit” means a unit division of which would materially impair the value of the goods or the character of the unit.

제35조 제2항은 물품이 제공된 때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지 않은 상황을 다루고 있다. 매수인이 물품을 장기간 사용하면 할수록 검사자로서의 매수인의 자격이 물품을 受理한 사람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물품이 계약에 일치하는지를 알기 위한 기회를 가질 때까지 물품을 수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⁵⁰⁾

제35조 제3항은 매수인인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소비자로 간주될 때에는 배제 불가능하다. 매수인이 소비자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⁵¹⁾ 물품의 受理와 관련하여 서명을 함으로써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작은 글씨로 인쇄된 인도증, 수령증 등에 소비자가 서명을 요구받게 되는 그러한 종류의 서류가 널리 이용되는 관행이 있다. 소비자가 물품의 포장을 풀고 결함이나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 소비자는 물품이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에 서명하였고 따라서 법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결과를 초래한다. SGA는 이러한 종류의 인수증, 수령증 등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제35조 제3항은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배제시키는 어떠한 시도로 무효이며, 1999년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를 침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수증, 영수증 등에 서명하거나, 구두 승낙에도 불구하고, 검사기회를 갖지 못한 소비자는 물품 거절권을 가지게 된다.⁵²⁾

제35조 제4항은 受理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 즉,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하였다는 것을 매도인에게 통지함이 없이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하면 그는 물품을 受理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5조 제5항은 제4항에서의 합리적인 시간의 경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합리적인 검사기회를 가졌었는가의 여부를 포함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6항 또한 소비자를 위한 규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그 물품을 원하기 때문에 그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그들이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그들이 구입한 물품은 잘 작동되며 구입한 목적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50) Bill Thomas, *op. cit.*, p. 40.

51) *Benjamin's Sale of Goods*, §12-050.

52) *Benjamin's Sale of Goods*, §13-091.

점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며 물품을 거절하는 것을 예상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무엇이 잘못될 때, 그들의 첫 반응은 무엇이 파손되었고 잘 작동되지 않는가 하는 점을 찾는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에서 단순한 修理나 손질로 잘 작동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과거에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는 두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그러한 조치는 매도인의 소유권과 양립하는 행위로 취급되었으며 이는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할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둘째, 修理를 위해 하자 있는 물품을 그대로 둬으로써 합리적인 시간이 계속 경과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몇 주 또는 몇 달이 경과한 후 修理되었어야 하나 아직 작동이 잘 안되는 때에 와서 매수인은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물품을 受理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제35조 제6항 (a)호는 하자 있는 물품을 고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受理에 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여전히 제4항의 규정에 구속된다. 즉, 매수인이 물품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 길이는 修理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受理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절하다.⁵³⁾

제35조 제7항은 “상업 단위”(commercial units) 즉, 한 세트나 그룹을 이루는 아이템의 그룹들을 다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매수인이 물품의 얼마를 유지하면서 그 일부의 거절을 허용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예컨대, 한 질의 백과사전 중의 한 권을 受理하는 것은 한 질 전체를 受理하는 것으로 간주된다.⁵⁴⁾

4) 물품의 일부 거절권

1994년 Sale and Supply of Goods Act에 의해 제35A조⁵⁵⁾를 신설하였다.

53) Bill Thomas, *op. cit.*, pp. 40~42.

54) 1999년 5월 25일자 “Directive 99/44/EC”가 영국법의 일부로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제35조는 2001년 12월말까지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55) (1) If the buyer-

(a) has the right to reject the goods by reason of a breach on the part of the seller that affects some or all of them, but

(b) accepts some of the goods, including, there are any goods unaffected by the breach,

he does not by accepting them lose his right to reject the rest.

(2) In the case of a buyer having the right to reject an instalment of goods,

SGA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물품의 일부 수리는 제11조 제4항에 의해 나머지의 거절을 금하였다. 이에 한 예외가 있었다. 제30조 제4항에 의해 물품이 상이한 명세의 물품과 혼합되어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은 전체를 受理 하든가, 아니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受理하고 나머지를 거절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은 실로 일부 거절에 관한 다른 정책을 나타내고 있었고, 제30조와 쉽게 융화될 수 없었다. 1994년 개정의 목적은 일부 거절을 허용하는데 있다. 상이한 명세의 물품과 혼합된 물품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무효화시켰다.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은 제35A조 제1항에 의해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할 때 다음과 같은 선택권을 가진다. 즉, 매수인은 ① 양호한 물품을 수리하고 불량한 물품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양호한 물품과 불량한 물품의 일부를 수리하고 나머지를 거절할 수 있다. ③ 모든 물품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모든 물품을 수리할 수 있다. 제2항은 이러한 규칙이 할부계약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위반에 의해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다면, 물품은 본 조의 목적을 위해 위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본 조는 반대의 의도가 계약에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묵시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⁵⁶⁾

제35A조는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매도인 측의 위반에 따라 매수인이 물품 거절권을 가지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물품의 일부를 수리한다면, 이에 따라 매수인이 나머지를 거절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는 예컨대, 물품은 실제로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었지만 서류에는 선적기간을 경과해서 선적되었음을 기재하고 있고 따라서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매도인 측의 위반이 없는 경우와 같이, CIF 계약의 매수인이 물품에는 하자가 없지만 서류 거절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에 매수인이 판매된 물품의 일부에만 관련된 서류를 수리한다면, 매수인은 다른 서류를 거절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

subsection (1) above applies as if references to the goods were references to the goods comprised in the instalment.

(3)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above, goods are affected by a breach if by reason of the breach they are not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4) This section applies unless a contrary intention appears in, or is to be implied from, the contract.

56) Bill Thomas, *op. cit.*, pp. 43~44.

부 포기에 관한 규칙에 유추해서 또는 수리에 관한 SGA의 실질적인 규정은 물품의 수리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항상 서류의 수리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⁵⁷⁾

5. 기타 改正內容

1987년 Debtors (Scotland) Act에 의해, 스코틀랜드에서의 매도인에 의한 압류 규정인 제40조를 무효화시켰다.

1994년 Sale and Supply of Goods Act에 의해, 제53조 제5항의 “Nothing in this section prejudices or affects the buyer’s right of rejection in Scotland as declared by this Act.”를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Scotland.”로 바꾸었다.

1994년 Sale and Supply of Goods Act에 의해, 제53A조⁵⁸⁾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스코틀랜드의 전문용어를 도입하기 위함이다.

1994년 Sale and Supply of Goods Act에 의해, 제55조 제2항의 “condition or warranty”를 “term”으로 바꾸었다.

제61조 제1항에서, 1995년 Sale of Goods (Amendment) Act에 의해 “bulk”의 정의⁵⁹⁾를 신설하였고, “delivery”의 정의에 “except that in relation to sections 20A and 20B above it includes such appropriation of goods to the contract as results in property in the goods being transferred to the buyer”를, “goods”의 정의에 “and includes an undivided share in goods”를, “specific

57) *Benjamin’s Sale of Goods*, § 19-137.

58) (1) The measure of damages for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is the estimated loss directly and naturally resul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events, for the breach.

(2) Where the seller’s breach consists of the delivery of goods which are not of the quality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e buyer retains the goods, such loss as aforesaid is prima facie the difference between the value of the goods at the time of delivery to the buyer and the value they would have had if they had fulfilled the contract.

(3) This section applies to Scotland only.

59) “bulk” means a mass or collection of goods of the same kind which-

(a) is contained in a defined space or area; and

(b) is such that any goods in the bulk are interchangeable with any other goods therein of the same number or quantity;

goods”의 정의에 “and includes an undivided share, specified as a fraction or percentage, of goods identified and agreed on as aforesaid;”를 추가하였다. 또 1994년 Sale and Supply of Goods Act에 의해 “consumer contract”의 정의⁶⁰⁾를 신설하고, “quality”에 관한 정의를 무효화시켰다. 또한, 1994년 Sale and Supply of Goods Act에 의해 제61조 제2항을 무효화시켰다. 제61조 제4항에서 1985년 Insolvency Act에 의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대해서는 “Whether he has committed an act of bankruptcy or not, and whether he has become a notour bankruptcy or not”을, 1985년 Bankruptcy(Scotland) Act에 의해 스코틀랜드에 대해서는 “and whether he has become a notour bankruptcy or not”을 무효화시켰다. 마지막으로 1994년 Sale and Supply of Goods Act에 의해 제5A항⁶¹⁾을 신설하였다.

Ⅲ. 改正SGA의 問題點

1. “만족스러운 品質” 基準의 適用上の 問題

이미 본 바와 같이, SGA 제14조 제2항은 품질에 관한 묵시조항으로 기존의 “판매가능품질”이란 개념을 “만족스러운 품질”이란 개념으로 바꾸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상사매매 뿐만 아니라 소비자매매에도 적합한 개념을 찾는데 있다. 그렇지만 법률위원회의 10년 이상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이러한 개정은 소비자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다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상사분쟁 측면에서는 불필요했다는 지적이 있다.⁶²⁾ 예컨대, 소비자

60) “consumer contract”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25(1) of the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and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onus of proving that a contract is not to be regarded as a consumer contract shall lie on the seller;

61) References in this Act to dealing as consumer are to be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Part I of the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and,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it is for a seller claiming that the buyer does not deal as consumer to show that he does not.

62) 법률위원회는 “satisfactory” 대신에 “acceptable”이란 말을 추천하였으나, “acceptable”은 “satisfactory”보다 하위의 요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입장에서 적합한 내구성의 결핍으로 인한 장기간의 물품 거절권은 거래의 확실성과 종결성이 극히 중요한 상사분쟁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그 성격이 다른 소비자매매와 상사매매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정립하려고 한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판매가능 품질”의 사고에서 “만족스러운 품질”로의 사고의 전환은 상사분쟁에는 적절하지 못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질의 기준에 관하여 긍정적인 조건을 구하지 않고 대신 물품이 자유로워야 하는 하자의 형태를 기술하는 접근방법이 보다 좋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의 어려움이 야기된다. “판매가능품질”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원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사고를 도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판례법을 참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⁶³⁾ 앞으로의 법원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 所有權 問題

영국의 전통적인 관습법의 원칙에 따르면, 살화물의 일부매매의 매도인이 매매된 수량을 구현하고 있는 선화증권 또는 인도지시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도 물품은 살화물에서 분리될 때까지 불특정 상태로 남기 때문에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SGA 제16조와 Re Wait 사건에서의 규칙이다. 이러한 이유로 Re Wait 사건과 SGA 제16조를 포함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SGA의 규정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아 왔다.⁶⁴⁾

이미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GA에 제18조 규칙 5에 제3항과 제4항, 제20A조, 제20B조 등을 추가하였지만, 이 역시 소유권적 해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다시 말하면, 소유

63) *Benjamin's Sale of Goods*, §11-057.

64) SGA 제16조에 대한 비판으로 Davenport 법률위원회 위원이 적절한 예를 들고 있다. 그는 동조는 상인들이 요청하는 바와도 다르며 또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하면서, 예컨대 매도인이 물품 100병 중 99 병을 재매각하는 경우 물품이 특정되지 않아 소유권의 이전은 없게 되는데, 만약 관리인이 부주의로 1병을 파손하였다면 이제 물품이 특정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면서 제16조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정을 주장하였다(B. F. Davenport, "Ownership of Bulk Cargoes," *LMCLQ*, 1986, pp. 4~7).

권의 소재여부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이미 국제 상거래가 너무 복잡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세계각국이 서로 다른 법체제와 이론을 가지고 있어서 소유권의 구성과 이전방법에 대한 통일된 입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UCC는 소유권적 해결을 거부하고 있다. UCC 제2-401조에 의하면, 개별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소유권이 어느 당사자에 귀속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즉, 위험이나 피보험이익 등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는가의 여부 또는 대금지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들은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구체적인 문제는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의 개념을 일단 배제하고 여타의 법률행위, 즉 위험이전, 담보권, 피보험이익, 대금지급 등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⁶⁵⁾ 이러한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서 소유권의 귀속여부를 가지고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⁶⁶⁾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도 당사자 사이의 문제해결에 소유권 개념을 배제하고 대신에 특정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실제적인 합의, 화물의 발송,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 등과 같은 상거래에서의 개별적인 법률행위에 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⁶⁷⁾

한편, 우리 나라의 吳元奭 교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와 일반협정서로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이행불능에 대한 근거를 확보

65) 梁暎煥·崔銘國 共著, 前掲書, p. 215.

66) Calvin W. Corman, *Commercial Law - Cases and Materials*, Little, Brown and Company, 1983, p. 159. 최후의 보루로서 소유권의 귀속여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대비하여, UCC는 제2-401조 제2항에서 소유권의 이전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어떠한 담보권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또 소유권증서가 다른 때와 곳에서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특히 선화증권에 의한 담보권의 어떠한 유보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물품의 물리적 인도에 관한 의무이행을 완료한 때와 곳에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당사자간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인도가 물품의 이동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a) 매도인이 권리증권을 인도하기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러한 증권을 인도한 때와 곳에서 이전되며, b) 물품이 계약체결 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또 증권의 인도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소유권은 계약이 체결되는 때와 곳에서 이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물리적 인도를, 동조 제3항은 상징적 인도를 각각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67) Iwan Davies, *op. cit.*, p. 131; 藤枝 哲, 國際貿易賣買における所有權移轉時期理論の一反省, 日本貿易學會年報 17, 1980. 2, pp. 93~94.

할 수 있고 정형거래조건의 채택으로 비용부담, 위험부담, 당사자의 의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준거법을 채택하므로 계약성립, 이행 및 종료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시기를 논의할 실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⁶⁸⁾라고 하여 당사자 사이의 문제해결에 소유권의 귀속여부를 배제하고 대신 여타의 법률행위를 들고 있는 UCC의 접근방법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 이하 CISG로 약칭한다.)도 소유권의 이전시기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제30조에서 매도인의 의무로서 소유권의 이전의무를 들고 있다. 이는 세계각국이 서로 다른 법체제와 이론을 가지고 있어서 소유권의 구성과 이전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⁶⁹⁾

결론적으로 SGA는, 비록 영국의 국내법이기는 하지만, 국제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UCC와 같은 입법태도를 가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IV. 結 論

본고는 SGA의 주요개정내용과 특징을 개설적으로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징적으로 개정된 분야로는 먼저, 묵시조항과 관련하여 “판매가능품질”의 정의 대신에 “만족스러운 품질”의 정의를 도입하고, 물품이 “만족스러운 품질” 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인들을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정은 상사매매 뿐만 아니라 소비자매매에도 적합한 개념을 찾는데 있었지만, 소비자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다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상

68) 吳元爽, 國際物品買賣契約에서 所有權移轉時期에 관한 論爭의 實益, 貿易商務研究 제7권, 韓國貿易商務研究會, 1994. 7, p. 30.

69) 헤이그 국제사법회의가 제안한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에 적용할 법률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Transfer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은 1958년 4월 15일에 각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으나 단지 이탈리아만 서명하여 발효되지 않았던 예가 있다(李好挺, 國際私法, 經文社, 1983, p. 90; 朝岡良平, 貿易買賣と商慣習, 제3판, 東京布井出版, 1981, p. 91).

사분쟁 측면에서는 불필요했다는 지적이 있다. 왜냐 하면, “판매가능품질”의 사고에서 “만족스러운 품질”로의 사고의 전환은 상사분쟁에는 적절하지 못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법원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살화물 중의 일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다수의 조항을 개정 내지 신설하였다. 그렇지만 이 역시 소유권적 해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이미 국제 상거래가 너무 복잡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세계각국이 서로 다른 법체계와 이론을 가지고 있어서 소유권의 구성과 이전방법에 대한 통일된 입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SGA는, 비록 영국의 국내법이기는 하지만, 국제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UCC와 같은 입법태도를 가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 梁暎煥·崔銘國 共著, 貿易賣買論, 博英社, 1994.
- 望月禮二郎, 英米法, 現代法律學全集 55, 青林書院, 1985.
- 吳元奭, 國際物品賣買契約에서 所有權移轉時期에 관한 論爭의 實益, 貿易商務研究 제7권, 韓國貿易商務研究會, 1994. 7.
- 李好挺, 國際私法, 經文社, 1983.
- 藤枝 哲, 國際貿易賣買における所有權移轉時期理論の一反省, 日本貿易學會年報 17, 1980. 2.
- 朝岡良平, 貿易賣買と商慣習, 제3판, 東京布井出版, 1981.
- Corman, Calvin W., *Commercial Law - Cases and Materials*, Little, Brown and Company, 1983.
- Davenport, B. F., "Ownership of Bulk Cargoes," *LMCLQ*, 1986.
- Davies, Iwan, "Continuing Dilemmas with Passing of Property in Part of a Bulk," *JBL*, 1991.
- Guest, A. G. edited, *Benjamin's Sale of Goods*, 5th edition, Steet & Maxwell, 1997.
- Schmitthoff, Clive M., *Export Trade*, 9th edition, Sweet & Maxwell, 1990.
_____, *Export Trade*, 10th edition, Sweet & Maxwell, 2000.
- Law Commission Working Paper No. 112, "Rights to Goods in Bulk," 1989.
- Law Commission Working Paper No. 215, Scotland Law Commission Working Paper No. 145, 1993.
- Thomas, Bill, *The Sale of Goods Act explained*, The Stationery Office,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Main Features and Problems of SGA Amendment

Choi, Myung Kook

This paper is focussed on the main features and problems of SGA amendment. main features and problems are as below.

First, SGA section 14 uses a new term, that of “satisfactory quality”, which is defined in a somewhat circular way and introduces some guidelines in order to solve other problems perceived as arising under the “merchantable quality”. The change was largely to assist in the better resolution of consumer disputes and not necessary for commercial disputes because the change involves the substitution of a phrase which meant something but was inappropriate to commercial disputes. As with the definition of “merchantable quality”, a court can take the new formulation as an invitation to start afresh; or it can refer to the previous case law.

Second, before the SGA amendment, a contract for the sale of undifferentiated part of a bulk shipped or to be shipped on a named ship was a contract for the sale of unascertained goods. So the effect was that property could not pass to the buyer, even though he had paid the price in full, before the goods become ascertained. The main object of the SGA amendment was to improve the buyer’s position where he had paid for a specified quantity of goods forming an undifferentiated part of an identified bulk and the seller then became insolvent before the goods for which the buyer had paid were ascertained. The improvement was achieved by making section 16 of the SGA 1979 subject to a new section 20A and including section 20B, under which a buyer of a specified quantity bulk can acquire a proprietary interest in the bulk. This proprietary solution still has

some problems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refore, it would be more appropriated SGA should settle disputes between parties through payment, passing of risk, delivery of goods and/or documents etc. instead of property rights like UCC.

Keywords : SGA, satisfactory quality